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84호,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장 신설(안 제2장)

나. 기존 제1장 총칙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 관련 규정(제2조~제6조)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안 제3장, 제3조~제7조)

다.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설명·홍보,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통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라.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마.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조성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바.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기반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사. 통일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원의 구체적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아. 안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절차·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8조의2를 제9조의2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설명·홍보,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통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 기반조성이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소통 지원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지원·상담
4.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민간단체의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대북정책 관련 활동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별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지역별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원의 구체적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절차·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조성”을 삽입한다.

제3조 앞에 “제3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삽입한다.

제6조의2(중전의 제5조의2)제2항 중 “제3조부터 제5조”를 “제4조부터 제6조”로 한다.

제8조 앞에 “제4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남북회담대표 등”을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장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u>
<u><신 설></u>	<u>제2조(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u> <u>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u> <u>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u> <u>“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u> <u>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남북관</u> <u>계 발전 및 대북·통일정책에 관</u> <u>한 설명·홍보, 남북관계 발전 및</u> <u>남북교류에 관한 실적·통계 등</u> <u>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u> <u>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u> <u>할 수 있다.</u> <u>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u> <u>제1항제2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u> <u>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u> <u>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제</u> <u>안,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u> <u>의 정책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u> <u>하여야 한다.</u> <u>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u> <u>따른 지역별 기반조성이란 남북</u> <u>관계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와</u> <u>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u>

역별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지원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지원·상담

4.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민간단체의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대북정책 관련 활동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별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
은 지역별 기반조성 사업을 추
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
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원의 구체
적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절차·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
청) ----- 법 제13조제2
항 -----

<신 설>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
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
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제3조 ~ 제5조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
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생략)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신설>

제7조 ~ 제10조 (생략)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3. (생략)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

제4조 ~ 제6조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
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조부터 제6조-----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삭제>

제4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제8조-----

2. 3. (현행과 같음)

②-----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u>제8조</u>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 (생략) ④ <u>제9조</u> 및 <u>제10조</u>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제12조</u> (생략) <u>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u> <u><신설></u> <u>제13조</u> ~ <u>제19조</u> (생략) <u>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u> <u><신설></u> <u>제20조</u> ~ <u>제23조</u> (생략)	----- ----- <u>제9조</u>-----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0조</u> 및 <u>제11조</u>----- -----. <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u><삭제></u> <u>제5장 남북회담대표 등</u> <u>제14조</u> ~ <u>제20조</u>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u><삭제></u> <u>제6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u> <u>제21조</u> ~ <u>제24조</u>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5772